

청주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343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1. 3. 4.

주 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33,839원 및 위 금원 중 25,820,208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10.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6.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6. 28. 접수 제686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사박현수

별지